

#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현황

□ 근거: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(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·훈련)

※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직원에 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·훈련을 받게 하여야 함

□ 교육·훈련 기본방향

-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
-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·훈련 시행
- 현장 실습 위주의 특화된 교육·훈련 서비스 제공
- 선진 교육시설 및 설비를 이용한 고객 만족도 제고

□ 교육대상: 선박·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,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

□ 교육과정: 5개 과정(선박 정규·재교육, 유해액체, 해양시설 정규·재교육)

□ 교육과목: 해양환경관리법, 해양오염방지설비, 방제실습 등 10개 과목

□ 운영기관: 해양환경관리공단(해양환경교육원, 부산시 영도구 소재)

※ 근거: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(위임 및 위탁)

□ 주요 실습 시설·설비

| 구분 | 방제실습 조파수조   | 기름여과장치  | 분뇨처리장치   | 소각기   |
|----|---|---|--|---|
| 사진 |  |  |  |  |

□ 운영실적

○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횟수 및 시수

| 과정명                  |      | 개설횟수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'11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'15년 |
| 선박의<br>해양오염<br>방지관리인 | 정 규  | 15   | 13   | 12   | 12   | 12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재교육  | 18   | 17   | 17   | 17   | 17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유해액체 | 6    | 5    | 5    | 5    | 6    |
| 해양시설·<br>해양환경관리업     | 정 규  | 5    | 6    | 7    | 6    | 8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재교육  | -    | -    | -    | 2    | 2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|      | 44   | 41   | 41   | 42   | 45   |

○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양성실적('11년 ~ '15년) : 총 8,541명

| 과정명             | 대상자    | '11년 |       | '12년 |       | '13년 |       | '14년 |       | '15년 |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| 회    | 명     | 회    | 명     | 회    | 명     | 회    | 명     | 회    | 명     |
| 해양오염<br>방지관리인교육 | 선원     | 39   | 1307  | 35   | 1310  | 34   | 1391  | 34   | 1,453 | 35   | 1,451 |
|                 | 해양시설 등 | 5    | 257   | 6    | 247   | 7    | 333   | 8    | 358   | 10   | 434   |
| 소 계             |        | 44   | 1,564 | 41   | 1,557 | 41   | 1,724 | 42   | 1,811 | 45   | 1,885 |